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5월 19일

##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사방법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의료장비의 설치를 권장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켜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조)
- 나. 응급의료 지원 사항 명시.(안 제4조)
- 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안 제5조)
- 라.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권장.(안 제6조)
- 마.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실시.  
(안 제8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7일까지(20일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시의회문교사회전문위원실,전화032-440-6223,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 출 자                      | 해당 조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고 |
|----------------------------|-------|-----------|----|
| ○ 주 소:<br>○ 성 명:<br>○ 연락처: |       |           |    |

###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한다)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응급의료시행계획과 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인력의 공급 및 교육·훈련계획
2.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계획
3. 환자이송체계의 개선계획
4.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운영계획
5.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발생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
6. 응급의료기금의 운용계획
7. 기타 응급의료에 필요한 시책

제4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医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직접 및 위탁교육)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구 및 보건소 등 청사
2.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3. 설치 권장 시설 :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제6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관리 담당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와 일반시민, 학생들에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